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5년 5월 11일

국 무 총 리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장 관 유 기 준

◉대통령령 제26235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희생자 가족단체의 의견 수렴

제5조(행정지원실) ①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
2.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조정
3.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4.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7.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총괄·조정
8.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업무 총괄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청사 출입 관리
3. 위원회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4. 공문·우편물·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총괄
5. 전산·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6.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결산 및 회계
9. 급여지급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0. 계약사무

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2. 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3. 국회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4. 국제 조사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제6조(진상규명국) ①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2.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의 요청
3.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4.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6.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제7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9. 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
2.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조사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제7조(안전사회과)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재난의 예방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
2.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5.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9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방법 등을 결정·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 계	120
정무직 계	5
위원장	1
부위원장	1
상임위원	3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계	115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8

행정사무관·부감사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전산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경정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23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기록연구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해양수산주사·경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38
행정주사보·감사주사보·검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경위 또는 7급 상당 별정직	39
8급 상당 별정직	4

비고

1. 이 표에 따른 직원의 정원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1명(서기관 1명)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4명(부감사관 1명, 감사주사 2명, 감사주사보 1명)은 감사원, 2명(방송통신주사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인사혁신처,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은 기획재정부, 4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교육부, 5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명, 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 5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2명,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2명)은 보건복지부, 4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은 해양수산부,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 후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2]

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 계	90
정무직 계	5
위원장	1
부위원장	1
상임위원	3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계	85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8
행정사무관·부감사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경정 또는 5급상당 별정직	23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기록연구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해양수산주사·경감 또는 6급상당 별정직 23

행정주사보·감사주사보·검찰주사보·전산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시설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경위 또는 7급상당 별정직 24

8급 상당 별정직 4

비고

이 표에 따른 직원의 정원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1명(서기관 1명)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3명(부감사관 1명, 감사주사 1명, 감사주사보 1명)은 감사원, 1명(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인사혁신처,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기획재정부,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교육부, 4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 3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명)은 보건복지부, 4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은 해양수산부,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별첨]

[입법예고결과]

제출자	내 용	조치 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국2과 체계를 3국 체계로 수정 필요(입법예고안 제2조, 제6조 및 제7조)	○ 미반영 - 안전사회 건설 및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는 과 단위에서도 가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직위에 공무원 파견 제한 필요(입법예고안 제4조 등)	○ 미반영 - 행정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 파견 필요
특별조사위원회 등	○ 조사1과장의 업무 중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포함시킬 필요 있음(입법예고안 제5조제4항).	○ 반영 -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조사1과의 업무에 포함
특별조사위원회 등	○ 90명인 정원을 확대할 필요 있음(입법예고안 제8조제1항).	○ 반영 - 업무 집행상황을 감안하여 별도 입법절차 없이 이 영 시행 후 6개월 후부터 정원을 120명으로 확대하기로 함.

특별조사위원회 등	○ 위원회 직원의 인력 배치를 민간 위주로 할 필요 있음(입법예고안 제8조제2항).	○ 반영 - 6급 및 7급의 파견공무원 비율을 조정하여 구성원 중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낮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 소위원회가 사무처의 국을 지휘·감독하도록 함(해당 조항 없음).	○ 미반영 -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게 됨.

◇제정이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증인 등의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법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제2조, 별표 1 및 별표 2)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우선 9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제3조부터 제8조까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을 두고,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며, 실·국에 두는 담당관·과와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의 업무 분장을 정함.

다. 증인 등의 보호(제9조)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이나 증인 등이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등(제10조제2항 및 제3항)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특별조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